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8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정의 조문 정비.....	2
2. 권원 없는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금지 및 처벌 신설.....	6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대상 구체화.....	13
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	15
5.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18
※ 참고자료	
1. 기술보호 민간 전담기관 지정 사례.....	24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 2) 발 의 일: 2024. 6. 4.
- 3) 회 부 일: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정의 조문 정비

□ 개정안은 제2조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세부체계에 대한 정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말한다.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접근·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 다.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다. 정보보호체계

□ 현행법은 제2조제3호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목의 체계’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각목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세부체계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있음.

그리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법 제2조제3호 각목의 규정보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개념 정의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법률과 시행령에서의 개념이 일부 중복되고 있음.

[현행 법률 및 시행령상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정의 규정 비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2조)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 고 관리하는 체계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 기술을 분류·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체계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접근·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 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체계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2조)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체계 2.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3.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대한 침입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및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를 통한 보호 체계 4.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체계

□ 개정안은 법 해석·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체계에 대한 정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체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부체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의 일부 중복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법 적용상의 어려움이 특별히 야기되는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법률에서 정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의

정의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보다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이 보다 간명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법 제1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¹⁾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²⁾

나아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³⁾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할 필요⁴⁾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되며, 법률에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그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됨(97헌가8).

2. 권원 없는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금지 및 처벌 신설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방위산업기술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 ⁵⁾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설>	제21조(벌칙) ① ----- -----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

□ 현행법상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및 사용 권한이 소멸된 경우 반환 및 삭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속한 자료 회수 및 기술 삭제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상기관⁶⁾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0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임. 방위사업청은 2020년 3월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신고 접수 시 정보수사기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2024.6)까지 4년간 방위산업 관련 자료유출은 34건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2020.3 ~ 2024.6)]

(단위: 건)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12	28	15	7	17
방산 관련 자료유출	6	8	3	5	12
미유출	6	14	11	1	1
확인불가 ⁷⁾	0	6	1	1	4

*자료: 방위사업청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7) 확인불가는 인력에 의한 분실, 업체의 사이버 공격 관련 로그 기록 미유지로 추적 불가 등임.

□ 위와 같은 방산기술 유출의 현황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서도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을 위한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와 입법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유사 입법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 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36조 (벌칙)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 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다만, 개정안은 권한 없는 자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금지 요건을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 등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권한 없는 사람이 그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부당 유출 등을 사전에 엄격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강화·보완하는 다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반환 거부 등의 금지 요건으로 ①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②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반환이나 삭제 요구, ③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④반환이나 삭제 등 거부 또는 기피, 사본 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 권한이 소멸된 자가 반환 요구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등을 거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어려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대한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개정안의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요건⁸⁾인 ‘고의 또는 중대한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

과실'의 요건을 추가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처벌 정도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신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일형으로 처벌하고,⁹⁾ 현행 임의적 병과인 '20억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사고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행의 처벌 기준이 다소 낮아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 있어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과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⁰⁾

개정안처럼 벌금형의 선택형 없이 단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처벌은 아닌지,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에서의 처벌 수위 등과 비교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9)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10) 91헌바11 전원재판부

[기술유출 등 처벌 입법례 비교]

	현행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해외 유출 침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임의적 병과) (제1호 및 제2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 (필요적 병과) (제1호·제2호 및 제4호)	[국가핵심기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의 벌금 (필요적 병과) [산업기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임의적 병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임의적 병과)
국내 유출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대상 구체화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등의 세부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 ----- <u>위하여</u> <u>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u> ----- ---.
<신 설>	<u>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u>
<신 설>	<u>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u>
<신 설>	<u>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만을 포괄적으로 부과하고 있고¹¹⁾, 방위산업기술 보호

1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¹²⁾를 참조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권고할 수 있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 2.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4조 및 제5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위원회 운영(제6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금지 및 처벌(제10조 및 21조), 실태조사(제11조의2 및 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제11조의2 제13항).

그리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요약]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보호대상, 적용범위 등 ○ 심의회 구성, 보호내규 작성 등 11개 조항
제2장 기술의 식별 및 관리	○ 기술식별, 인원관리 등 7개 조항
제3장 인원통제	○ 신원조사, 출입인원통제 등 6개 조항
제4장 시설보호	○ 기술보호구역 설정 등 5개 조항
제5장 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정보통신망 관리 등 4개 조항
제6장 연구개발 시 방위산업기술보호	○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 기술 보호 등 5개 조항
제7장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기술보호	○ 합작·기술제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 등 3개 조항
제8장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보호 등 1개 조항
제9장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조치 등	○ 실태조사, 개선권고, 시정명령 등 7개 조항

□ 그런데, 행정규칙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소속 직원들의 업무처리 기준 등을 규율하는 것을 넘어 수범기관(대상기관)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¹³⁾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13)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서는 연간 시행계획수립 의무(제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 작성의무(제5조),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의무(제7조), 신원조사 의뢰의무(제17조), 기술보호구역 설정의무(제24조),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관리의무(제29조), 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마련의무(제38조), 개선권고(제42조), 시정명령(제43조) 등.

□ 개정안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를 규정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산업체 및 관련기관이 보호지침을 활용하여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동 보호지침을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동 보호지침의 제정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취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유사 입법례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⁴⁾

둘째, 개정안은 동 보호지침을 방위사업청장이 마련하도록 하여 방위사업청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절차적 통제가 강화된 법규 명령(대통령령·부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¹⁵⁾ 이 경우 동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를 개정안과 같이 대상기관의 자율에 맡겨둘 경우 체계적인 방산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동 보호지침의 제정 취지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1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제5항에서도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 구축·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4.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 업무 지원 5.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업무 지원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10. 「대외무역법」 제20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방위사업청은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의 업무를 국방기술보호국(기술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¹⁶⁾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1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② 국방기술보호국에 기술정책과·기술혁신과·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기술정책과장·기술혁신과장·기술보호과장 및 기술심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개정 2023. 4. 11., 2023. 8. 30.>

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삭제<2021. 7. 23.>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삭제<2020. 4. 27.>
7. 삭제<2020. 4. 27.>
8.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개선
9.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의 전파 및 관리

제16조¹⁷⁾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¹⁸⁾ 세부적으로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위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용역계약¹⁹⁾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특히, 방산분야 사이버 보안관제·사고대응 및 기술통제 집행업무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2년 7월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있음.

· 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14. 삭제<2021. 7. 23.>
15.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6.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
17.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및 판정
- 1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 1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9) 용역수행 업무 내용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기반 기술보호 수준 분석,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컨설팅 등
--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정원 19명) 업무 분장]

부 서	업무 분장
기술통제 연구팀	-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판정 기술지원 - 군용전략물자(기술)·국방과학기술 판정 기술지원 - 수출허가(수출가능여부, 국제입찰참가승인, 수출예비승인) 기술지원 - 기술이전 기술지원 - 국방기술통제목록 작성(3년 주기) - 국제협력(바세나르체제 등) 기술지원
기술침해 분석팀	- 방산업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사이버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보완 조치 -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구축 기획 -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술보호 조사팀	-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정기 및 수시) 지원 -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자문
기술보호 관제팀('24년 신설 추진)	- 방산업체 대상 24시간·365일 실시간 사이버 보안관제 - 방산업체 대상 모의해킹 등 정보보안체계 취약점 진단

*자료: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은 순환보직제로 운영되다 보니 기술보호·감시·관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장기간 축적할 수 없어 기술보호 체계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국방기술 품질원 내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술보호 지원 업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그 성격상 높은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도화되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만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²⁰⁾와 국방기술품질원²¹⁾은 방위산업기술 관련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의무를 지는 등 전담기관의 업무인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담기관 지정 대상에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외부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외부 민간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면, 추가적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보안사고 우려, 재원부담 증가 및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와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방에 필요한 장비·병기 및 물자와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함.

21) 국방기술품질원은 2006년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그리고 개정안의 전담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현행 조직과 인원을 활용하게 되므로 시급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향후 조직 및 기능 확대 경향 등에 비추어 추가 예산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2024년 8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²²⁾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전략물자 판정업무' 전체를 위임할 예정이므로, 개정안 중 '전략물자 판정업무에 대한 지원(제2항 제10호)'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22) 「대외무역법」 제20조(전문판정) 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8조에서 같다)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판정(이하 “전문판정”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전문판정을 신청할 경우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20.][시행일: 2024. 8. 21.] 제20조

※ 참고자료: 기술보호 민간 전담기관 지정 사례

기관 (설립연도)	관계부처	보호대상	근거 법률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04년)	중기부	중소기업기술	「상생협력법」 제20조(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한국산업기술 보호협회 ('07년)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산업기술 보호협회의 설립 등)
전략물자 관리원 ('07년)	산업부	전략기술	「대외무역법」 제29조(전략물자관리 원의 설립 등)
한국인터넷 진흥원 ('09년)	과기부	사이버보안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 진흥원)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09년)	특허청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발명진흥법」 제55조의2(한국지식 재산보호원의 설립), 제55조의3(보 호원의 업무)
국가사이버 안보센터 ('04년)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업무규정」